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-24호

「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9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현재 18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의회 의원배지 재료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권고 및 타 시·군의회 개정 추세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솔선수범하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

※ 행정자치부 권고: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제작
나.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적용

2. 주요내용

가. 붙임3 (배지서식)의 **재료항목 삭제**

나. **제명 띄어쓰기 적용** (상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4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lunalena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상주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